

보상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HD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정관 제42조와 이사회 규정 제 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보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,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위원의 자격도 당연 상실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 다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의 임기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위원장의 유고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부이사항)

위원회가 심의 또는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 한도의 승인
2. 등기이사의 보수 또는 지급 기준 승인
3. 미등기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위원회에 부의를 요청한 사항

제 10 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·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11 조 (통지의무)

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3 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 다만, 법령 변경에 따른 단순한 조문 수정, 회사 내 조직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이 규정의 체계와 효력에 직접적인 효력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개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부 칙

부 칙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